

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1 - 10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요구이유

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, 전문성,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

나. 위탁기간 : 2022. 1. ~ 2024. 12.(3년간)

다. 사업비 : 1,528백만원/연

(국 764(50%), 도 229.2(15%), 군 534.8(35%))

○ 주택 : 1,204백만원(국 602, 도 180.6, 군 421.4)

○ 비주택 : 172백만원(국 86, 도 25.8, 군 60.2)

○ 지붕개량 : 152백만원(국 76, 도 22.8, 군 53.2)

라. 사업량 : 420동/연(주택·비주택 철거 390, 지붕개량 30)

마. 위탁비용 : 122백만원/연(사업비의 8%)

바. 위탁범위 : 슬레이트 처리(해체·제거) 및 지붕개량사업

○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

○ 업체 선정, 계약 체결

○ 슬레이트 면적조사, 사업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, 교육 실시

○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

사. 그간 추진현황

○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(2013년)

(단위 : 동)

계	주택	공장	창고	축사	시설	기타
10,784	7,914	55	1,564	917	61	273

○ 추진실적

(단위 : 동)

구 분	철 거 현 황			잔여 슬레이트
	철거율(%)	계	환경과 도시건축과	
계	23.0	2,491	2,304	187
2013년		138	129	9
2014년		162	100	62
2015년		262	199	63
2016년		189	136	53
2017년		368	368	-
2018년		230	230	-
2019년		358	358	-
2020년		568	568	-
2021년		216	216	-
				추진 중

○ 추진방법

- 2013~2016년 :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
- 2017년 : 직접 수행(민간경상보조사업)
- 2018년 : 직접 수행(시설비)

※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7조 개정(2017.2.28.)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(20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, 민간위탁,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)

- 2019~2021년 : 민간위탁 추진(한국석면안전협회)

○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

- 20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 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, 범위 확대, 석면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 (2018.11.)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

아. 운영계획(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)

- 업체선정 : 공개모집 /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

○ 참가자격

- 슬레이트 해체·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인력의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-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·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

○ 위탁업체 선정방법

-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: 절대평가(40점), 상대평가(60점)
 - ▶ 사업수행능력 : 배점 40점(발주부서 평가, 절대평가) ⇒ 실적평가(30점), 경영상태(10점)
 - ▶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: 배점 60점(심의위원 평가, 상대평가)
⇒ 사업수행 목표, 준비계획,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

○ 평가방법

- 절대평가 :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에서 평가
- 상대평가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

○ 위탁기간 : 2022. 1. ~ 2024. 12.(3년간)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

- 2013~2016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,
- 2017년 2월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위탁 규정 삭제로 직접 수행한 결과,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, 전문성,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19~2021년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추진중임.

나. 관계 법령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「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」 (2021.1. 환경부)

다. 향후 계획

- 2021. 7. :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제출
- 2021. 9. ~ 10. : 민간위탁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, 선정

- 2022. 1. 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
- 라. 소요예산
- 위탁운영비 : 사업비의 8%
- 마. 위탁운영 계획안 : 붙임 참조

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2017년부터 직접 추진하고 있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와 지원범위 확대
- 행정 효율성 및 석면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효과 거양

I 위탁 근거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「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」(2021.1 환경부)

II 위탁 개요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/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 업체 선정
- 위탁기간 : 2022. 1. ~ 2024. 12.(3년간)
- 사업비 및 사업량(2021년)

구 분	사 업 비(천원)			사업량 (동)	비고
	계	국비(50%)	도비(15%)		
계	1,528,000	764,000	229,200	534,800	420
주택 슬레이트 처리	1,204,000	602,000	180,600	421,400	350
비주택 슬레이트 처리	172,000	86,000	25,800	60,200	40
주택 지붕개량	152,000	76,000	22,800	53,200	30

※ 사업량과 사업비는 변동 가능(매년 협약 체결)

- 위탁수수료 : 122백만원/연(사업비의 8%)
- 위탁범위 : 슬레이트 처리(해체·제거) 및 지붕개량 사업

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
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, 계약체결
- 슬레이트,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
- 슬레이트 처리, 지붕개량 등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, 교육실시
-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

○ 수탁자 자격기준

- 슬레이트 해체·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인력의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 능력과 공신력,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-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·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

Ⅲ 그간 추진현황

○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(2013년) (단위 : 동)

계	주택	공장	창고	축사	시설	기타
10,784	7,914	55	1,564	917	61	273

○ 그간 추진실적 (단위 : 동)

구 분	철 거 현 황				잔여 슬레이트
	철거율(%)	계	환경과	도시건축과	
계	23.0	2,491	2,304	187	
2013년		138	129	9	10,784
2014년		162	100	62	10,622
2015년		262	199	63	10,360
2016년		189	136	53	10,171
2017년		368	368	-	9,803
2018년		230	230	-	9,573
2019년		358	358	-	9,215
2020년		568	568	-	8,647
2021년		216	216	-	추진 중

○ 추진방법

- 2013~2016년 :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
- 2017년 : 직접 수행(민간경상보조사업)
- 2018년 : 직접 수행(시설비)

※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7조 개정(2017.2.28.)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(20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, 민간위탁,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)

- 2019~2021년 : 민간위탁 추진(한국석면안전협회)

○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

- 20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, 범위 확대, 석면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(2018. 11.)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

IV 운영계획(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)

○ 업체선정 : 공개모집 /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

○ 참가자격

- 슬레이트 해체·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- 인력의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-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·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

○ 위탁업체 선정방법

-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: 절대평가(40점), 상대평가(60점)
 - ▶ 사업수행능력 : 배점 40점(발주부서 평가, 절대평가) ⇒ 실적평가(30점), 경영상태(10점)
 - ▶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: 배점 60점(심의위원 평가, 상대평가)
 - ⇒ 사업수행 목표, 준비계획,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

○ 평가방법

- 절대평가 :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에서 평가
- 상대평가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

○ 위탁기간 : 2022. 1. ~ 2024. 12.(3년간)

V 향후 계획

- 2021. 9. ~10. : 민간위탁 공고, 심의위원회 개최, 선정
- 2022. 1. 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

붙임 관련 법령 1부. 끝.

관 련 법 령(요약)

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(행정복지국 행정과)

(제정) 1999.07.15 조례 제1515호
(일부개정) 2013.06.12 조례 제2138호
(일부개정) 2014.05.28 조례 제2192호

제 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-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-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제 5조 (수탁기관의 선정)

-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

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(전문개정2013.6.12)

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(개정 2013.6.12)

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

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, 수탁기관 선정,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군 소속 공무원(개정2014.5.28)

2. 대학교수,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개정2014.5.28)

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,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08. 1. 14 개정 2013.6.12.)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(약칭: 지방계약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[전문개정 2009. 2. 6.]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[전문개정 2009. 2. 6.]

제7조(계약사무의 위임·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, 중앙행정기관의 장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·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9. 2. 6.]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지방계약법 시행령)

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(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한다)·용역(청소·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)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창의성·예술성,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(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9. 15.,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9. 13.>

석면안전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5조(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) ①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·제거·처리 및 석면의 해체·제거·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1. 28.>

제26조(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)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·제거·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조, 제120조 및 제123조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·제거·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>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(약칭 : 공유재산법)
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"총 사용가능기간"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4. 1. 7., 2015. 1. 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8., 2014. 1. 7., 2015. 1. 20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. <개정 2010. 2. 4.>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
<신설 2010. 2. 4.> [전문개정 2008. 12. 26.]